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쟁점과 사례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4편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쟁점과 사례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4편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서문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한-미 FTA를 기반으로 조성된 대미 통상환경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2일 미국은 국가별로 11%에서 50%까지 각각 다른 상호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이 발표하는 상호관세를 포함한 모든 추가 관세는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수출기업에게 생소한 「비특혜 원산지」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세율이 부과되는 외국의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고세율 국가로 판정된다면 기업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비특혜원산지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대미 수출전략의 핵심입니다.

이 책자는 대미 수출기업의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판정사례를 정리한 실전형 안내서입니다.

원산지 관리를 위한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6월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백현



I. 미국 관세정책 현황 및 비특혜원산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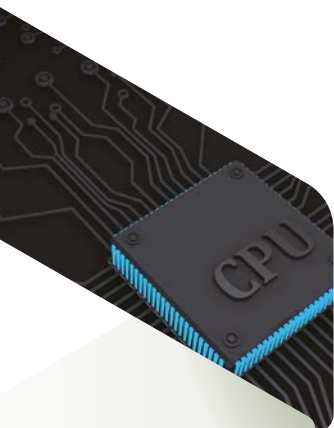
01. 미국 관세정책 현황	09
02.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10
03. 미국의 원산지 기준	13
04. 미국의 사전심사제도	14

II.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

Case 01. 팬 블로어 어셈블리	18
Case 02. 낚시대-릴 세트	21
Case 03. 일체형 냉장·냉동고	23
Case 04. 오븐	27
Case 05. 팬 블로어 어셈블리	29
Case 06. 알루미늄 모니터 암	32
Case 07. 알루미늄 울타리 키트	34
Case 08. 스피커 스탠드	36
Case 09. CPU 열 모듈	39
Case 10. 자동차용 충격 흡수 크래시박스	41
Case 11. 컴퓨터 캐비닛	45
Case 12. 화분 받침용 이동대	48
Case 13. 굴착기 커버 어셈블리	51

부 록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10대 FAQ	56
CBP 사전심사제도 신청 방법	62
CBP 사전심사 사례 조회 방법	65





I.

미국 관세정책 현황 및 비특혜원산지 기준

01. 미국 관세정책 현황	09
02.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10
03. 미국의 원산지 기준	13
04. 미국의 사전심사제도	14

이 미국 관세정책 현황

현황

-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대규모 관세 조치를 연이어 시행 중임
특히, 4월 2일부로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종가세를 부과하고(4.5 시행), 57개국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이한 추가 관세(상호관세)*** 발표
* 우리나라 25%, EU 20%, 일본 24%, 베트남 46%, 대만 32% 등이며, 국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시행 유예(기본 세율 10%만 시행 중)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 주요 현황

- ① (03.12)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추가 25% 관세 시행(무역확장법 제232조)
- ② (03.26) 자동차 추가 25% 관세 시행(무역확장법 제232조)
- ③ (04.05) 기본 상호관세 10% 시행(국제비상경제권한법)
- ④ (04.09)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 우리나라 25% (국제비상경제권한법) ➡ 90일 유예 발표
- ⑤ (05.03) 특정 자동차 부품 추가 25% 관세 시행(무역확장법 제232조)
- ⑥ (05.14) 중국 상호관세 인하(125% → 34%), 90일 유예 발표(기본 상호관세 10% 적용)
- ⑦ (06.04)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 25% → 50% 상향 시행(무역확장법 제232조)
- ⑧ (06.12) 철강 파생제품 과세 대상 11개 품목* 추가 발표, 6.23 시행(무역확장법 제232조)
*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오븐, 기타 가구 부분품 등

관세부과 체계

- 기본 또는 한-미 FTA 세율에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관세 또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등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이 더해지는 구조

〈한국산 물품의 미국 수출 시 적용되는 관세율〉



02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Check Point

- ✓ 미국의 관세부와 내용은 미국의 품목번호(HTSUS)로 발표됨
- ✓ 품목번호는 세계관세기구(WCO) 기준에 따라 6단위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지만, 7단위 이하는 각국이 달리 운영함
- ✓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관세청이 발표하는 연계표를 참고하여 부과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부과대상 및 세율

● 부과대상 : 미국 품목번호(HTSUS*) 기준 공개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구분	품목 지정 포고령번호	미 HTS(함량신고시)	비고
철강 파생제품	9980	99038189	
	10896	99038190	관세청 FTA 포털 내 연계표 공개
	10896	99038191	관세청 FTA 포털 내 연계표 공개
알루미늄 파생제품	9980	99038504	
	10895	99038507	관세청 FTA 포털 내 연계표 공개
	10895	99038508	관세청 FTA 포털 내 연계표 공개

*** 유의사항**

- 미국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대상과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과대상 품목은 미 상무부가 직권 또는 자국 산업계의 요청 등을 반영하여 수시로 변경·고시할 수 있음
- 상무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부과대상 품목이 상시로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수출기업은 지속적인 확인과 주의가 필요

- **세율** :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에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5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며, 그 외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



-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적용을 받는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은 상호관세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두 관세는 중복 부과되지 않음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우선 적용되며, 관세는 중복 부과되지 않음

상호관세(국제비상경제권한법)

추가 10%('25.6.23. 기준)

- **대상** : 모든 물품
 - **제외대상** :
 - 1) 50 U.S.C 1702(b)에 따라 인도적 목적 등으로 수입이 보장되는 필수 소비재나 의약품 등
 - 2)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적용을 받는 물품
 -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
 - 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
 - 3) 부속서2에 열거된 품목(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제품, 특정 주요 광물 등, HTSUS 공개*)
 - 4) 미국 관세율표(HTSUS)의 제2열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는 교역 상대국의 모든 물품
(예: 북한, 쿠바 등)
 - 5) 향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
 - 6) 품목 가치 중 최소 20% 이상이 미국산인 경우, 그 미국산 함량
 - 7) 4.11 추가 발표한 반도체 제조 장비, 스마트폰, 노트북 등 20개 품목(HTSUS 공개*)
- * 3), 7) 관세청 FTA 포털 내 연계표 공개

신고방법(미국 수입신고 시) ※ '25.6.13. CBP FAQ 기준

- 첫 번째 줄에는 철강·알루미늄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 요소의 가치를, 두 번째 줄에는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가치(value of content)를 각각 입력
 -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 함량을 모르는 경우,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전체 가치에 대해 5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됨
-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가치(value of content)는 미 관세법 제1401a조(19 U.S.C. §1401a)에서 규정한 관세평가 협정의 원칙에 따라 산정됨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하는 총 금액(total price paid or payable)으로, 국제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송, 보험 및 기타 관련 서비스에 대한 비용, 수수료 또는 경비를 제외한 직접 또는 간접 비용
- 철강 파생제품은 조강(melt and pour) 국가, 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제련(smelt) 및 주조(cast) 국가를 국제표준화기구(ISO) 국가코드로 신고
 - 해당 국가를 모르는 경우, 철강 파생제품은 'OTH'로 신고하고, 알루미늄 파생제품은 'UN (Unknown)'으로 신고(이 경우 200%의 관세가 부과됨)*

* CBP CSMS #65340246 참조

03 미국의 원산지 기준

Check Point

- ✓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으로 관세부과
- ✓ 원산지에 따라 세율 차이가 발생하며, 원산지는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판단함

가. 미국의 원산지 기준

- **한-미 FTA** : FTA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 **일반 원산지(비특혜원산지) 판단기준** : 둘 이상의 국가에서 상품 또는 재료를 생산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

관련 규정 : 미 연방규정 19 CFR 134

“원산지 국가”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산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말한다. 다른 나라에서 물품에 더해지는 추가 가공이나 추가 물질은 그러한 다른 국가에 이 장에서 의미하는 “원산지 국가”를 부여하기 위해 반드시 **실질적 변형**을 가져와야 한다.

나.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

-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는 경우 ‘원산지’로 판단**
- **미 CBP*가 개별 사례에 대해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우리나라 관세청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기능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관세부과 및 징수 실무 담당

〈(예시) 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부과 시 미국 수입 세율 비교〉

구분	MFN	제301조	대중국 추가관세		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상호관세	최종관세
			'25.2	'25.3	'25.6		
한국 수출 시 (FTA 체결국)	0%	-	-	-	50%	알루미늄 제외	50%
중국 수출 시 (FTA 미체결국)	0~12.5%	7.5~25% *8541.90의 경우 50%	10%	10%	50%	알루미늄 제외	70~107.5%

04 미국의 사전심사제도

Check Point

- ✓ CBP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수입 전 통관 리스크를 예방하고, CBP의 법적 구속력 있는 해석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CBP 사전심사제도(CBP Advance Ruling, 19 CFR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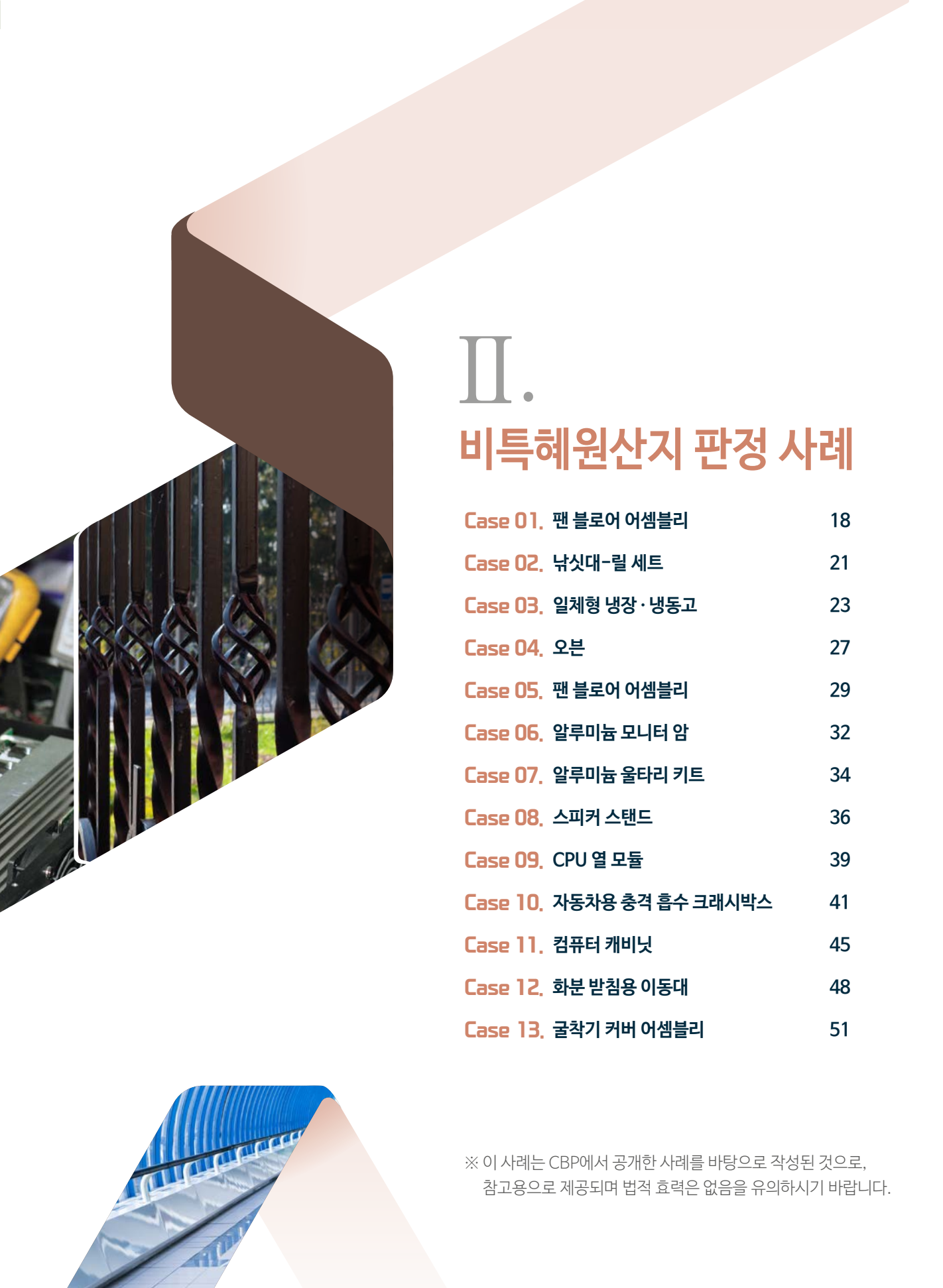
수입 전 품목분류, 원산지, FTA적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미국의 사전판정제도

- **신청** : 본부(Headquarters) 또는 뉴욕 소재 품목분류 전문부서(NCSD*)

* 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

일반적으로 관세평가(Valuation), 운송(Carrier) 등 주로 결정이 복잡한 판정은 본부(HQ)에서, 품목분류(Classification) 등 결정이 간단한 경우의 판정은 뉴욕(NY)에서 처리함

- **신청방법** : 서면 또는 온라인
- **신청인** : 수입자, 수출자, 해당 판정 요청 사안의 이해관계자, 대리인
- **결정유형** : ① 품목분류, ② 원산지 표시, ③ 원산지, ④ FTA적용
- **답변기한** : 30일(일반적일 경우)



II.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

Case 01. 팬 블로어 어셈블리	18
Case 02. 낚싯대-릴 세트	21
Case 03. 일체형 냉장·냉동고	23
Case 04. 오븐	27
Case 05. 팬 블로어 어셈블리	29
Case 06. 알루미늄 모니터 암	32
Case 07. 알루미늄 울타리 키트	34
Case 08. 스피커 스탠드	36
Case 09. CPU 열 모듈	39
Case 10. 자동차용 충격 흡수 크래시박스	41
Case 11. 컴퓨터 캐비닛	45
Case 12. 화분 받침용 이동대	48
Case 13. 굴착기 커버 어셈블리	51



※ 이 사례는 CBP에서 공개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법적 효력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생상품 관련 CBP 사전판정 사례 List

Case	판정번호	날 짜	사 례 명
01	NY N309707	2020.03.11.	[팬 블로어 어셈블리]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02	NY N310250	2020.03.17	[낚싯대-릴 세트]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03	HQ H314180	2021.01.22.	[일체형 냉장 · 냉동고]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04	NY N318138	2021.04.01.	[오븐] 원산지 판정
05	HQ H318255	2021.11.03.	[팬 블로어 어셈블리]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06	NY N329853	2023.01.12.	[알루미늄 모니터 암] 원산지 판정
07	NY N334681	2023.09.06.	[알루미늄 오타리 키트]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08	NY N335711	2023.10.31.	[스피커 스탠드]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09	NY N337260	2024.01.26.	[CPU 열 모듈]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10	HQ H335139	2024.05.01.	[자동차용 충격 흡수 크래시박스]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11	HQ H305371	2024.07.12.	[컴퓨터 캐비닛]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12	NY N342353	2024.09.11.	[화분 받침용 이동대]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13	HQ H327665	2025.03.25.	[굴착기 커버 어셈블리]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Case 01. 팬 블로어 어셈블리

사 례 명

- [팬 블로어 어셈블리]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09707(2020.03.11.)

사 실 관 계

요청자	Shinano Kenshi Corporation(대리인 : Global Logistix Co.)		
제 품	제 품 명	팬 블로어 어셈블리(부품번호 IDRF-3432-502M)	
	구 성	•스테이터(stator) •로터(rotor) •임펠러(impeller), 하우징 등	
	용 도	CPAP(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Machine)에 사용되는 공기 순환 장치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8414.59.656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스테이터 조립(멕시코 내 진행) - 중국산 스테이터 코어에 중국산 자성 와이어를 감음 - 절연 시트(중국산) 및 PCBA를 납땜하여 연결 - 조립된 스테이터를 중국산 하부 하우징에 부착 - 중국산 리드 와이어 하네스 및 일본산 씰(seal)을 부착 후 경화 2. 로터 조립(멕시코 내 진행) - 중국산 샤프트에 고정 링 설치 - 멕시코 또는 미국산 와셔를 샤프트에 부착 - 볼 베어링을 베어링 하우징 및 샤프트에 접착제를 사용해 결합한 후 경화 - 자석을 로터 요크에 부착하고 자화한 뒤, 최종 로터 조립체 완성 3. 최종 조립(멕시코 내 진행) - 중국산 임펠러를 로터에 압입(press-fit)한 후 접착제로 고정 - 스테이터와 로터를 결합 - 중국산 상부 하우징을 부착 - 테스트 및 품질 검사 4.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C.F.R.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참고 판정 : *CBP Ruling(HQ) H301619(2018)*

- 실질적 변형 판단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1982)*

- 미국 관세법상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다양한 원산지를 가진 부품들이 최종 제품으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① 사용된 부품의 종류, ② 그 부품들이 거치는 제조 과정 등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됨
- 단일 요소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으며, 단순한 조립(minimal assembly)은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지 않음

● (판정 결과)

- 각 유닛의 공기 순환 부품과 모터 부품을 포함하여, 중국 및 일본산 부품을 조합한 모든 구성품은 멕시코에서 수행된 일련의 제조·조립 공정을 거치면서 개별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임펠러(impeller)와 모터(motor)로 구성된 단일 기능의 팬 블로어 어셈블리로 재구성됨
- 특히 멕시코 내에서 수행된 조립, 접착, 자화, 경화 등의 공정은 단순 조립 수준을 넘어 제품에 새로운 기능과 성질을 부여하는 의미 있는 제조 과정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산지를 멕시코로 판정함
- 결과적으로, 본 제품은 미국 무역법 제301조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결 론

- 멕시코에서의 조립 및 가공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므로, 원산지는 멕시코로 판정되어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Case 02. 낚싯대-릴 세트

사 례 명

- [낚싯대-릴 세트]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10250(2020.03.17.)

사 실 관 계

요청자	Pure Fishing, Inc.	
제 품	제 품 명	낚싯대-릴 세트
	구 성	• 낚싯대(중국산) : 유리섬유 또는 흑연, 스테인리스강, 티타늄, 세라믹, 알루미늄, 플라스틱, EVE 폼, 코르크 등으로 구성 • 릴(한국산) : 플라스틱,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아연, 마그네슘, 황동 등으로 구성
	용 도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9507.3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한국에서 릴 제작 후 중국 수출 2. 중국에서 중국산 낚싯대와 함께 조립하여 Combo Set로 완성 3. 소매용으로 포장하여 미국으로 수출	

쟁 점 사 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19 C.F.R. §134.1 (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참고 판례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1940)

-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며, 어떤 물품이 외국에서 만들어진 이후, 다른 국가에서 경미한 공정(minor processing)이나 단순 조립(simple combining)만을 거친 경우, 해당 제품의 정체성(identity)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판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이때 고려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음

- ① 각 부품의 원산지
- ② 해당 국가 내에서 이루어진 가공의 정도
- ③ 그러한 가공을 통해 새로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창출되었는지 여부

- **(판정 결과)**
 - 릴은 한국산이고 낚싯대는 중국산이나, 중국에서 수행된 조립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여 구성품이 새로운 제품으로 실질적 변형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릴과 낚싯대 세트의 원산지는 릴이 제조된 한국으로 판단
 -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 중국 내 단순 조립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한국산 릴의 원산지(한국)가 세트 전체의 원산지로 판정되므로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Case 03. 일체형 냉장·냉동고

사 례 명

- [일체형 냉장·냉동고]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HQ H314180(2021.01.22.)

사 실 관 계

요청자	Dometic North America(대리인 : Expeditors Tradewin, LLC)		
제 품	제 품 명	일체형 냉장·냉동고(모델명 DM2672)	
	구 성	• 시나리오 1 - 부품 원산지 비율 : 멕시코 46%, 중국 44%, 미국 8%, 기타 - 멕시코산 : 발포 캐비닛, 가스 밸브 버너, 전원/제어 모듈, 철제 선반 등 - 중국산 : 발포 냉각 유닛, 제어 배선, 핀 팩, 도어, 하단 선반, 디스플레이, LED 조명 등 - 미국산 : 배수 호스, 물받이, 버너 플레이트, 손잡이, 중간 선반, 야채 보관함 등 - 기타 : 히터(폴란드), 서미스터(스웨덴), 바플(인도네시아), 하드웨어(대만) • 시나리오 2 - 부품 원산지 비율 : 멕시코 69%, 중국 29%, 미국 0.07%, 기타 - 멕시코산 부품 비중이 증가했으며, 주요 부품(도어, 선반, 디스플레이, 배수 호스 등)이 대부분 멕시코산 - 중국산 : 냉각 유닛, LED 조명 - 기타 국가 제조 부품은 시나리오 1과 동일	
	용 도	냉장 및 냉동 기능을 모두 갖춘 일체형 기기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8418.10.0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 시나리오 1 :

1. 여러 구성품을 멕시코로 수입
 - 중국산 : 냉각 유닛, 도어, 제어 디스플레이, LED, 제어 배선 등
 - 멕시코산 : 캐비닛, 가스 밸브 어셈블리, 제어 모듈 등
 - 미국산 : 선반, 손잡이, 드레인 트레이 등
 - 기타(폴란드, 스웨덴, 대만 등) : 히터, 센서 등
2. 멕시코 제조공정
 - 캐비닛 내부에 배선, 드레인 호스, 센서 등 삽입 및 밀봉
 - 핀 팩을 캐비닛 벽면에 접착
 - 중국산 냉각 유닛을 캐비닛에 고정하고 밀봉 테이핑
 - 히터, 가스 밸브, 제어 모듈 장착 및 배선 연결
 - 냉동/냉장실 증발기 코일과 연결
 - 도어 조립, 선반 및 내부 구성품 설치
 - 최종 작동 테스트, 도장 및 포장
3. 미국으로 수출

• 시나리오 2 :

1. 여러 구성품을 멕시코로 수입
 - 중국 : 냉각 유닛, LED
 - 멕시코 : 도어, 제어 디스플레이, 제어 배선, 핀 팩, 선반, 드레인 호스, 트레이, 손잡이 등
 - 기타(폴란드, 스웨덴, 대만 등) : 히터, 센서 등
2. 멕시코 제조공정
 - 멕시코산 배선, 센서, 디스플레이, 핀 팩을 캐비닛에 설치
 - 중국산 냉각 유닛 삽입 및 밀봉
 - 히터, 가스 밸브, 제어 모듈 장착 및 전체 배선 연결
 - 도어 조립 및 제어 인터페이스 고정
 - 내부 선반 및 구성품 설치
 - 전체 기능 테스트, 외관 도장 및 포장
3.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1 (b) of the Trade Act 1974』에 따라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며,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이 적용됨
 - 실질적 변형 판단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681 F.2d 778(1982)

- 미국 관세법상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 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지며, 사례별(case-by-case)로 이루어짐
- CBP는 새롭고 다른 상업적 물품(new and different article of commerce)을 상업적 명칭 또는 정체성(commercial designation or identity), 본질적 성질(fundamental character) 또는 상업적 용도(commercial use)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로 보며, 이러한 판단에서 핵심 요소는 수행된 작업의 범위와 그 과정에서 원재료가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최종 제품의 본질적 구성 요소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임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참고 판례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2016)

- Generation II 손전등은 대부분의 부품이 중국산이며 일부 백색 LED 및 수소 흡착제는 타국산으로, 모든 부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어 조립된 후 완성품으로 제조됨
-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를 검토하고 여러 판례를 참조하여, 수입 후 가공이 조립에 불과한 경우, 특히 수입된 부품이 물리적으로 변화하지 않은 경우, 성질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또한, 수입 시점에 최종 용도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조립의 성격, 즉 단순한 조립인지 또는 보다 복잡한 조립인지도 고려함
- 법원은 단순 조립 공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완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
- 이 판례는 단순 조립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품이 상업적 정체성(name, character, use)을 바꿀 만큼 가공되지 않는 한, 최종 원산지는 조립 국가가 아닌 핵심 부품의 원산지로 결정됨을 명확히 함

참고 판정 : *CBP Ruling(NY) N309293(2020)*

- 태국 및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냉장 장치를 제조한 사례로, 모든 조립 공정은 태국에서 수행됨
- 냉각 유닛, 캐비닛, 냉각 시스템 배관 등의 주요 부품이 태국에서 생산되었고, 우레탄 주입, 용접, 배관 연결, 진공 및 가스 충전 등의 복잡한 조립 및 기능 통합 공정이 수행됨
- 중국산 압축기 및 증발기 등 외국산 부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조립 이후에는 개별 부품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새로운 상업적 물품으로 탈바꿈함
- CBP는 공정의 복잡성, 상호 기능적 연결성, 최종 제품의 상업적 정체성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조립 공정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는 판단하고 원산지를 태국으로 판정함
- 이 사례는 조립이 단순한지를 넘어, 제품 기능의 통합과 정체성 변화 여부가 실질적 변형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보여줌

참고 판정 : *CBP Ruling(NY) N307836(2019)*

- 태국 및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냉장 장치를 제조한 사례로, 모든 조립 공정은 태국에서 수행됨
- 도어 라이너 및 내부 라이너는 타이완에서 성형, 주요 부품(응축기, 증발기 등)은 태국에서 제조되었고, 냉각 시스템 배관 연결, 우레탄 성형, 압축기·증발기 조립 등 복잡한 조립 공정이 수행됨

- 중국산 압축기와 기타 외국산 부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 조립을 통해 개별 부품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기능적으로 통합된 새로운 완제품으로 완성됨
- CBP는 공정의 복잡성, 기능적 통합, 최종 제품의 상업적 정체성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정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산지를 태국으로 판정
- 이 사례는 개별 부품이 단순히 결합되는 수준을 넘어서, 최종 제품으로 기능적·구조적으로 통합되어야 실질적 변형이 인정됨을 보여줌

참고 판정 : CBP Ruling (NY) N305178 (2019)

- 중국산 및 태국산 부품과 서버어셈블리를 사용하여 냉장·냉동 장치를 제조한 사례로, 모든 생산 및 조립 공정은 태국에서 수행됨
- 태국 또는 중국산 원재료를 가공하여 파이프, 내부 라이너, 단열재, 프리어셈블리 부품 등을 생산하고, 우레탄 성형, 배선 설치, 내부 구조 조립 등 복잡한 조립 공정이 수행되었으며, 응축기, 증발기, 압축기, 도어 등 핵심 구성품이 설치되고 냉각 시스템 배관과 냉매 가스 충전도 수행
- CBP는 이러한 복잡한 공정, 부품의 정체성 상실, 최종 제품의 상업적 독립성 확보 등을 근거로 해당 조립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산지를 태국으로 판정
- 이 사례는 서버어셈블리 수준의 부품이라 하더라도, 조립과정을 통해 물리적·기능적으로 완전히 통합되어 새로운 물품으로 탈바꿈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인정됨을 보여줌

- 위의 판정들과 마찬가지로 냉각 공정의 핵심 구성요소는 응축기(condenser), 압축기(compressor), 팽창장치(expansion device), 증발기(evaporator)이며, 냉장고의 냉각 유닛은 이들 외에도 제어장치, 열원(heat sources), 기타 보완 부품이 조립 국가에서 함께 결합되어야 비로소 완성됨
- 그러나 본 건의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발포 냉각 유닛 서버어셈블리는 중국에서 냉매, 수소 가스, 크로메이트 나트륨이 충전된 상태로 멕시코 내 조립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완성된 부품으로 간주됨
- 시나리오 1은 주요 구조적 및 냉각 관련 부품이 중국에서 제조되며, 이들 어셈블리는 모두 일체형 냉장·냉동고의 핵심 기능과 목적 수행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므로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단
- 시나리오 2에서는 발포 냉각 어셈블리는 여전히 중국에서 제조되지만, 냉장 기능과 전반적인 성능(냉각 제어, 보온 구조 등)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이 멕시코에서 제조되며, 이들 부품이 제품의 기능적 정체성을 결정하므로 원산지는 멕시코로 판단

● **(판정 결과)**

- (시나리오 1) 주요 기능 부품이 중국산이고, 멕시코에서의 조립은 단순 조립에 해당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됨
- (시나리오 2) 주요 기능 부품이 멕시코산이며 조립 역시 멕시코에서 수행되었으므로 원산지는 멕시코로 판정됨

결론

- (시나리오 1) 멕시코에서 수행된 공정은 단순 조립에 해당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제품은 중국산으로 간주되며,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임
- (시나리오 2) 멕시코에서 주요 기능 부품의 제작 및 복합적인 조립 공정이 수행되었으므로, 해당 제품은 멕시코산으로 간주되며,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는 적용되지 않음

Case 04. 오븐

사 례 명

- [오븐] 원산지 판정

사 례 번 호

- NY N318138(2021.04.01.)

사 실 관 계

요청자	Thai Toshiba Electric Industries Co., Ltd.(대리인 : White & Case LLP)	
제 품	제 품 명	오븐(모델명 MGS30S2A, MGS30S4A)
	구 성	• MGS30S2A : 6.1 입방피트 용량, 19,000 BTU/hr 오븐 버너 출력, 16,000 BTU/hr 브로일러 출력, 5개의 상부 버너 (총 51,000 BTU) • MGS30S4A : 위와 유사한 사양 + 1,000W 컨벡션 히터 및 그릴 팬 부착 (S2A 모델에는 없음) • MGS30S2A : 태국산 27%, MGS30S4A : 태국산 23%, 나머지는 중국, 이탈리아, 미국, 멕시코 등
	용 도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 여러 구성품을 태국으로 수입 - 중국, 이탈리아, 미국, 멕시코산 부품 및 부속품 - 일부 금속 부품, 플라스틱 부품, PCB 등은 태국 내 자체 생산 - 태국 제조공정 - 금속 부품 성형 : 프레스, 절곡, 탈지 등 160단계 이상 - 플라스틱 및 폼 부품 성형 : 사출 및 성형 공정 - PCB 조립 : SMT, 납땜, 회로 테스트, 프로그램 입력 - 하위 어셈블리 조립(63단계) (예 : 베이스 플레이트, 도어, 캐비티, 쿨링팬, 솔레노이드 등) - 최종 오븐 조립 및 테스트 -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19 C.F.R. §134.1 (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지며, 사례별(case-by-case)로 이루어짐
 - 이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실질적 변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1) 구성 부품의 원산지
 - 2) 해당 국가 내에서 수행된 가공의 정도
 - 3) 해당 가공을 통해 새로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탄생했는지 여부
- ※ 이 외에도 다음 요소들이 추가로 고려될 수 있음
- 제품 설계 및 개발에 투입된 자원
 - 조립 이후 수행되는 검사 및 시험 절차의 범위와 성격
 - 실제 제조 과정에서 요구되는 작업자의 숙련도

● (판정 결과)

- 태국에서의 제조 공정은 비원산지 부품과 구성품을 완성된 오븐으로 전환하며, 이는 수입된 개별 부품에는 없던 고유한 성질(character)과 용도(use)를 갖는 새로운 상업적 물품을 창출한 것으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해당 오븐의 원산지는 태국으로 판정됨

결론

- 태국에서 수행된 제조 공정은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태국으로 판정됨

Case 05. 팬 블로어 어셈블리

사 례 명

- [팬 블로어 어셈블리]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HQ H318255(2021.11.03.)

사 실 관 계

요청자	Shinano Kenshi Corporation(대리인 : TECMA Customs Solutions LLC)		
제 품	제 품 명	팬 블로어 어셈블리(부품번호 IDRF-3432-504-M)	
	구 성	• 중국산 : 스테이터 코어, 인슐레이터, 자성 와이어, 리드 와이어, 하단 하우징, 베어링 하우징, 샤프트, 볼 베어링, 스러스트 와셔, 자석, 로터 요크, 임펠러, 상단 하우징, 너트 • 일본산 : 납, 와이어 납, 하단 하우징 쉘, 웨이브 와셔, 접착제, 나사, 윤활제 • 미국 또는 멕시코산 : PCBA, 절연 시트, 접착제, 분할형 와셔	
	용 도	• 수면 중 호흡 보조를 위해 지속적인 기류와 양압을 제공하는 의료기기인 CPAP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Machine)에 사용되는 공기 순환 장치 • CPAP 기기 내부에 장착되어 환자가 보다 원활히 호흡할 수 있도록 정밀한 기류를 생성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8414.59.65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여러 구성품을 멕시코로 수입 2. 멕시코 제조공정 - 로터 어셈블리 및 자석 요크 조립 후 결합 - 로터 어셈블리에 임펠러 조립 - 멕시코에서 제작된 스테이터 어셈블리와 결합 - 최종 팬 블로어 어셈블리 조립 - 완제품 테스트 및 포장 3.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1 (b) of the Trade Act 1974』에 따라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며, 해당 목록에는 HTSUS 8414.59.65도 포함됨
 -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미국 관세법상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부품 또는 재료의 결합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결정적인 요소는 수행된 작업의 범위와 각 부품이 고유의 정체성을 잃고 새로운 물품의 필수 구성요소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례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6 CIT 204, 573 F. Supp. 1149(1983), *aff'd*, 741 F.2d 1368(Fed. Cir. 1984)

- 조립 작업이 단순하거나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판단 요소로는 조립 작업의 성격(예 : 조립되는 부품 수), 수행 작업 공정의 다양성, 작업 소요 시간, 숙련도, 세부 작업, 품질관리가 요구되는지 여부 등의 사항이 있음

참고 판정 : *C.S.D. 80-111*, *C.S.D. 85-25*, *C.S.D. 89-110*, *C.S.D. 89-118*, *C.S.D. 90-51*, and *C.S.D. 90-97*

- 만약,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참고 판례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1982), *aff'd*, 702 F.2d 1022(Fed. Cir. 1983)

- 외국산 신발 갑피(upper)에 미국에서 밀창(outsole)을 부착한 후 완제품 신발로 제조 → 원산지를 미국으로 주장
- 법원은 갑피가 신발의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며(the very essence of the completed shoe), 미국에서의 밀창 부착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다고 판시 → 실질적 변형 불인정, 원산지 외국산으로 유지

참고 판정 : CBP Ruling(HQ) H303864(2019)

- 부품을 서로 끼워 맞추는 프레스 피팅(press fitting)과 같은 단순 조립 공정은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CBP는 조립 공정을 평가할 때, 조립의 성격뿐만 아니라, 완제품에 본질적 성격(essential character)을 부여하는 부품의 원산지도 함께 고려함

참고 판정 : CBP Ruling(HQ) H304126(2020)

- 팬(fan) 또는 펌프(pump) 어셈블리의 경우, CBP는 일반적으로 모터(motor)가 제품에 본질을 부여하는 핵심 부품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함

참고 판정 : CBP Ruling(NY) N305251(2019)

- 모터의 원산지는 그 내부의 필수 구성요소인 스테이터(stator)와 로터(rotor)가 제조된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CBP의 일반적인 입장

참고 판정 : CBP Ruling(HQ) H303529(2019)

- 주요 하위 조립품 중 프린트 축(print axis)은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되고, 나머지 하위 조립품은 모두 중국에서 생산되어, 프린트 축을 포함한 최종 조립이 중국에서 이루어진 미완성 우편요금계(postage meter)에 관한 판정임
- 수입자는 프린트 축이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므로 원산지는 말레이시아라고 주장하였으나,
- CBP는 프린트 축이 중국에서 다른 구성요소와 결합되어 전체 제품의 일부로 포괄되고, 조립 공정이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보아,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
- 조립 공정의 복잡성 평가는 개별 부품 결합 여부만이 아니라, 해당 국가 내 전체 가공·조립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유사하게, 팬 또는 펌프 어셈블리 사례에서도 스테이터와 로터 코어 제작 이후의 후속 가공 범위가 실질적 변형 여부 판단에 핵심적으로 고려됨

참고 판정 : CBP Ruling(NY) N309707(2020)

- 중국산 부품(스테이터 코어, 로터 요크, 임펠러 등)을 사용하였으나, 멕시코에서 스테이터, 로터, 팬, 자석 요크 등 4개 서브어셈블리를 조립하고, 접착, 납땜, 권선, 프레스 피팅, 자화, 경화 등 복합적이고 정교한 공정을 거쳐 최종 팬 블로어 어셈블리를 완성
- CBP는 모든 부품이 개별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기능과 성질을 갖는 상업적 제품으로 재구성되었다고 보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으며 원산지는 멕시코로 판정함

● **(판정 결과)**

- 자석 요크 조립, 스테이터 및 로터 조립, 팬 어셈블리, 최종 조립에 이르는 일련의 복합적 제조공정을 통해 각 부품의 개별 정체성이 상실되고 새로운 제품(팬 블로어 어셈블리)이 창출되었으므로,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 따라서 일부 중국산 부품이 사용되었더라도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결론

- 멕시코에서의 복합 제조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로 판정되며,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Case 06. 알루미늄 모니터 암

사 례 명

- [알루미늄 모니터 암] 원산지 판정

사 례 번 호

- NY N329853(2023.01.12.)

사 실 관 계

요청자	Global Concepts Korea, Inc.	
제 품	제 품 명	Sapper XYZ Arm Assy(부품번호 5AD0600)
	구 성	• 다이캐스트 알루미늄 부품 8종(중국산) - 완성 제품의 약 65%의 중량, 29%의 가치, 65% 작업시간을 차지 • 기타 가스 스프링, 책상 고정용 클램프 등(한국산)
	용 도	평면 모니터(최대 20파운드, 약 9kg) 지지용 거치대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8302.50.000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중국에서 다이캐스트 알루미늄 부품 8종 한국으로 수입 2. 한국 제조공정 - 한국에서 나머지 부품 생산 및 가공(플라스틱 사출, 프레스 가공, 조립 등) - 전체 조립 시간 약 8분, 최종 제품 외관 검사 및 동작 테스트 수행 3. 포장 후 미국으로 완제품 수출	

쟁 점 사 항

-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C.F.R. §134.1 (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미국 관세법상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중국산 8개의 다이캐스트 부품이 완제품의 주체를 구성하며, 한국에서 추가로 구매 또는 생산되어 조립된 부품들은 중국산 다이캐스트 부품이 이미 갖고 있는 성질 및 용도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상업적 제품을 창출하지 못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결 론

- 한국에서의 조립 공정은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제품의 본질적 성격을 형성하는 중국산 다이캐스트 부품이 핵심을 이루고 있으므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

Case 07. 알루미늄 울타리 키트

사 례 명

- [알루미늄 울타리 키트]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34681 (2023.09.06.)

사 실 관 계

요청자	Custom Home Goods, LLC	
제 품	제 품 명	알루미늄 울타리 소매 키트
	구 성	• 3단 평상형(Flat Top) 레일 섹션(6' x 5') - 20개 • 라인 포스트(Line Posts) (2" x 2") - 20개 • 게이트 포스트(Gate Posts) (2" x 2") - 2개 • 표준 포스트 캡 - 22개 • 보행자용 용접 게이트(4' x 5') - 1개 • 나일론 게이트 경첩 - 1세트(2개) • 게이트 잠금장치 - 1개
	용 도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7610.90.008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중국산 알루미늄 프로파일, 포스트 캡, 게이트, 연결용 하드웨어를 멕시코로 수입 2. 멕시코 제조공정 - 자재 절단, 펀칭, 라우팅, 용접, 조립, 도장하여 펜스 섹션의 상단 평철, 라인 포스트, 게이트 포스트로 가공 - 조립 후 포장 3. 미국으로 수출	

쟁 점 사 항

-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무역구제 조치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단시에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기준임
 - 실질적 변형 판단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미국 관세법상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조립 작업이 단순하거나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판단 요소로는 조립 작업의 성격(예 : 조립되는 부품 수), 수행 작업 공정의 다양성, 작업 소요 시간, 숙련도, 세부 작업, 품질관리가 요구되는지 여부 등의 사항이 있음

참고 판정 : *C.S.D. 80-111, C.S.D. 85-25, C.S.D. 89-110, C.S.D. 89-118, C.S.D. 90-51, and C.S.D. 90-97*

- 만약,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참고 판례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외국산 신발 갑피(upper)에 미국에서 밑창(outsole)을 부착한 후 완제품 신발로 제조 → 원산지를 미국으로 주장
- 법원은 갑피가 신발의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며(the very essence of the completed shoe), 미국에서의 밑창 부착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다고 판시 → 실질적 변형 불인정, 원산지 외국산으로 유지

- **(판정 결과)**
 - 중국산 알루미늄 프로파일 및 부품이 멕시코로 반입되어, 멕시코에서 절단, 펀칭, 라우팅, 용접, 도장 및 조립 등 복합적인 가공 공정을 거쳐 완성된 펜스 키트(fence kit)로 제조됨에 따라, 중국산 부품은 새로운 구조물로 실질적 변형된 것으로 판단
 - 따라서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이며, 멕시코산 제품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 면제 대상임

결론

- 멕시코에서 수행된 복합 가공 공정은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로 판정되며,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는 적용되지 않음

Case 08. 스피커 스탠드

사 례 명

- [스피커 스탠드]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35711 (2023.10.31.)

사 실 관 계

요청자	Sonos, Inc. (대리인 : Mayer Brown LLP)		
제 품	제 품 명	Optimo 1 Stand, Optimo 2 Stand (Sonos 스피커용 플로어 스탠드)	
	구 성	• Optimo 1 : - 베이스 바닥 (플라스틱) - 무게추 (강철) - 베이스 커버 (강철) - 기둥 (알루미늄) - 기둥 캡 (플라스틱) - 플랫폼 링 (아연 합금) - 플랫폼 링 하단 커버 (플라스틱) - 와셔 (알루미늄) - 풋 (지지패드) (실리콘, 프라이머 처리) - 기타 체결 부품 (다양한 재질) • Optimo 2 : - 베이스 바닥 (플라스틱) - 무게추 (강철) - 베이스 커버 (강철) - 기둥 (알루미늄) - 기둥 캡 (플라스틱) - 스템 (알루미늄) - 와셔 (알루미늄) - 랜딩 패드 (실리콘) - 기타 체결 부품 (다양한 재질)	
		➔ Optimo 1과 Optimo 2의 차이는 스피커를 부착하는 방식 (플랫폼, 스템)과 높이에 따라 구분됨 ➔ 두 스탠드 모두 기본적으로 베이스, 기둥, 상단 (플랫폼 혹은 스템)의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	
	용 도	Sonos 스피커를 바닥에 고정하여 지지하는 금속 스탠드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9403.20.0050	

제조 과정	[상세 공정] • 시나리오 1 : 기둥은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되어 중국으로 운송되고 나머지 모든 부품은 중국산이며, 조립 및 포장 작업 모두 중국에서 수행 • 시나리오 2 : 기둥, 플랫폼 하단, 플랫폼 링, 스템은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되고 나머지 모든 부품은 중국산이며, 조립 및 포장 모두 중국에서 수행 • 시나리오 3A : 기둥, 플랫폼 하단, 플랫폼 링, 스템, 베이스 커버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되고 나머지 모든 부품은 중국산이며, 조립 및 포장 모두 중국에서 수행 • 시나리오 3B : 시나리오 3A와 동일하나, 말레이시아산 기둥, 플랫폼 링, 스템이 중국에서 파우더 코팅 처리됨
----------	---

쟁점사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19 C.F.R. §134.1 (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 일반적으로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할 때, 가공 또는 제조를 통해 외국산 재료가 기존과는 다른 명칭, 성질 또는 용도를 가진 새로운 물품으로 바뀌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참고 판례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1317(C.I.T. 2016)

(인용 : *Precision Specialty Metals, Inc. v. United States*, 116 F. Supp. 2d 1350, 1364(C.I.T. 2000))

- 실질적 변형 판단의 핵심은 다른 국가에서 수행된 작업이나 추가된 재료가 해당 물품의 성질(character)이나 용도(use)를 변경시켰는지에 있으며,
- 가공 중 추가된 재료의 형태가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물질적 성질의 변화(character change)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

- CBP 법령에 따르면, 하나의 물품이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 유래, 가공된 재료로 구성된 경우 해당 물품은 마지막으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지며, 사례별(case-by-case)로 이루어짐
- CBP는 새롭고 다른 상업적 물품(new and different article of commerce)을 상업적 명칭 또는 정체성(commercial designation or identity), 본질적 성질(fundamental character) 또는 상업적 용도(commercial use)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로 보며, 이러한 판단에서 핵심 요소는 수행된 작업의 범위와 그 과정에서 원재료가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최종 제품의 본질적 구성요소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임

- 가구 부품이 한 국가에서 생산되었다 해도 다른 국가에서 유사한 중요도를 가진 부품들과 함께 조립되어 새로운 명칭, 성질, 기능을 갖게 되는 경우 해당 부품은 원래의 본질적 성격(essential character)을 상실한다고 판단한 선례 존재

참고 판정 : CBP Ruling(HQ) H330862(2023)

- 한 국가에서 제조된 가구용 부품이 다른 국가에서 동등한 중요도의 부품들과 조립될 경우, 기존의 본질적 성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명칭, 성질, 기능을 갖는 제품으로 탈바꿈한 것으로 판단함

참고 판정 : CBP Ruling(HQ) H268491(2020)

- 가구 부품이 여러 국가의 부품과 함께 조립되는 경우, 단일 부품이 전체 제품의 본질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 최종 조립을 통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구성되었는지 여부가 원산지 결정의 핵심 요소라고 판단함

참고 판정 : CBP Ruling(NY) N334531(2015)

- 가구 또는 유사 제품의 경우, 특정 국가의 부품이 전체 제품의 본질을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 최종 조립된 제품이 새로운 상업적 정체성을 획득한 경우, 조립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함

- 위의 사례는 본 건 스피커 스탠드 사례에도 해당되며, 스피커 스탠드는 기둥(post) 외에도 베이스(base) 및 플랫폼/스템(platform/stem)이라는 세 가지 주요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세 구성품은 모두 스탠드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어느 하나의 부품이 다른 부품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 말레이시아산 부품들이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는 중국산 부품들과 함께 조립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명칭, 성질, 기능을 상실하고, 중국산 스피커 스탠드의 구성 요소로 탈바꿈한 것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포스트, 베이스, 플랫폼 혹은 스템이라는 세 가지 부품 모두 스피커 스탠드에 필수적이며, 개별 부품 혹은 원산지별로 분류된 부품들이 스피커 스탠드로서의 본질적 특성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지 않음
- 또한, 모든 제조 시나리오에서 두 스탠드는 약 10개 부품 중 6~9개가 중국산이며, 최종 조립 및 포장도 모두 중국에서 수행됨
- CBP는 제조 비용이 어느 국가에서 발생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원산지 판정에 있어 다소 단편적인 지표일 수는 있으나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할 경우 일정 부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봄
- 이에 따르면, Optimo 1 스탠드의 경우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말레이시아산 자재 및 가공 비용이 전체 비용의 약 17~40%를 차지하며, Optimo 2 스탠드의 경우는 약 19~38% 수준, 나머지 대부분의 비용은 모두 중국에서 발생함
- 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스탠드는 모두 중국산으로 판정함

결론

- Optimo 1 및 Optimo 2 스탠드는 중국에서 최종 조립 및 포장되며, 말레이시아산 부품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됨
- HTSUS 9403.20.0050에 해당하는 중국산 제품은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임

Case 09. CPU 열 모듈

사 례 명

- [CPU 열 모듈]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37260(2024.01.26.)

사 실 관 계

요청자	Joaquin Barragan	
제 품	제 품 명	베이퍼 챔버가 없는 열 모듈(부품번호 CHP075GB1012) 베이퍼 챔버가 포함된 열 모듈(부품번호 CHPA29GB1012)
	구 성	• 공통 : 알루미늄 핀, 구리 히트파이프, 알루미늄 베이스, 구리 플레이트, 고정용 부품 • 베이퍼 챔버 포함 제품은 추가로 베이퍼 챔버(Vapor Chamber) 포함
	용 도	자동차료처리장치(ADP) 장비의 CPU에 장착되어 열 방출 및 냉각 기능 수행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8473.30.510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 모든 부품을 중국산으로 멕시코로 수입 - 멕시코 제조공정 - 납땜 페이스트 기계를 이용해 각 부품에 납땜재 도포(수작업으로 배치) - 고온 오븐에 투입하여 접합 - 열 성능 및 물리적 허용 오차 테스트 - 라벨, 써멀 그리스(thermal grease) 도포, 플라스틱 그리스 커버 부착 -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쟁 점 사 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례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1940)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 2d 1201 (Fed. Cir. 1993)

참고 판례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1908)

참고 판례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1982)

- 만약,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참고 판례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1982), *aff'd*, 702 F.2d 1022(Fed. Cir. 1983)

- 외국산 신발 갑피(upper)에 미국에서 밑창(outsole)을 부착한 후 완제품 신발로 제조 → 원산지를 미국으로 주장
- 법원은 갑피가 신발의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며(the very essence of the completed shoe), 미국에서의 밑창 부착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다고 판시 → 실질적 변형 불인정, 원산지 외국산으로 유지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W968434(2007)*

참고 판례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1 CIT 470, 478, 664 F. Supp.535, 541(1987)

- 본 사안에서 CPU 열 모듈(Thermal Module)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자재는 중국산이며, 멕시코에서 수행된 열 전도성 자재의 수작업 배치, 조립, 오븐 가열을 통한 접합 공정은 복잡하지 않고, 열 방출 부품들을 열 방출 이외의 새로운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변형시키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조립 공정으로는 개별 부품에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열 모듈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멕시코에서 수행된 조립 공정은 단순하며, 해당 공정으로는 새로운 기능을 갖춘 물품으로의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국산 부품에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Thermal Module 제품은 중국산으로 간주되어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대상임

결론

- 멕시코에서의 조립 공정은 단순 공정에 불과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CPU 열 모듈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되어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임

Case 10. 자동차용 충격 흡수 크래시박스

사 례 명

- [자동차용 충격 흡수 크래시박스]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HQ H335139(2024.05.01.)

사 실 관 계

요청자	Waldasschaff Automotive Mexico S. de R.L. de C.V. (대리인 : Porter Wright Morris & Arthur LLP)	
제 품	제 품 명	Absorber Crashbox(자동차 충돌 에너지 흡수 장치)
	구 성	•알루미늄 프로파일(중국산) •스페이서 등 기타 부품(멕시코산)
	용 도	범퍼와 새시 사이에 설치되어 충돌 시 에너지를 흡수하여 차량 구조 손상을 최소화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8708.10.6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중국산 알루미늄 프로파일 멕시코로 수입 2. 멕시코 제조공정 - 절단(sawing) - U자형 가공 및 펀칭 - 세척(washing) - 열처리 및 인공 시효 처리(artificial aging process) - 스페이서와 최종 조립 후 품질 검사 3.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C.F.R.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한편,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1974』에 따라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며, 해당 목록에는 HTSUS 8708.10.60도 포함됨
 -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1982)

- 미국 관세법상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지며, 사례별(case-by-case)로 이루어짐
- CBP는 새롭고 다른 상업적 물품(new and different article of commerce)을 상업적 명칭 또는 정체성(commercial designation or identity), 본질적 성질(fundamental character) 또는 상업적 용도(commercial use)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로 보며, 이러한 판단에서 핵심 요소는 수행된 작업의 범위와 그 과정에서 원재료가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최종 제품의 본질적 구성 요소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임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참고 판례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2016)

- Generation II 손전등은 대부분의 부품이 중국산이며 일부 백색 LED 및 수소 흡착제는 타국산으로, 모든 부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어 조립된 후 완성품으로 제조됨
-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를 검토하고 여러 판례를 참조하여, 수입 후 가공이 조립에 불과한 경우, 특히 수입된 부품이 물리적으로 변화하지 않은 경우, 성질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또한, 수입 시점에 최종 용도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조립의 성격, 즉 단순한 조립인지 또는 보다 복잡한 조립인지도 고려함
- 법원은 단순 조립 공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완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
- 이 판례는 단순 조립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품이 상업적 정체성(name, character, use)을 바꿀 만큼 가공되지 않는 한, 최종 원산지는 조립 국가가 아닌 핵심 부품의 원산지로 결정됨을 명확히 함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083236 (1989)*

- 열처리(heat treatment)가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공정이 제품의 기계적 성질을 상당한 수준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판단

참고 판례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664 F.Supp. 535, 11 C.I.T. 470(1987)

- 냉간 압연 강판(cold-rolled steel sheet)에 수행된 연속 열침지 아연도금 공정(hot-dip galvanizing process)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냉간 압연 과정에서 손실된 연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소둔(annealing) 단계, 강판을 용융 아연(molten zinc)에 담그는 아연도금(galvanizing) 단계로 구성
- 법원은 이 연속 열침지 아연도금 공정이 강판의 성질을 변화시켰다고 보았으며, 이는 강판의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조성을 상당한 수준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다고 판시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 2d 1201 (Fed. Cir. 1993)

- 미국에서 수행된 강화, 세척, 조립 작업만으로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부품들이 수입 전에 이미 최종 형태로 냉간 성형 또는 열간 단조되었고, 미국에서의 조립 및 열처리 이후에도 부품의 형태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을 강조
- 최종 용도의 사전 결정이 실질적 변형의 존재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이 사건에서는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실질적 변화가 없었다고 판단

- 조립 작업이 단순하거나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판단 요소로는 조립 작업의 성격(예 : 조립되는 부품 수), 수행 작업 공정의 다양성, 작업 소요 시간, 숙련도, 세부 작업, 품질관리가 요구되는지 여부 등의 사항이 있음

참고 판례 : *Uniroyal, Inc.*, 3 C.I.T. at 224, 542 F. Supp. at 1029

- 기존 판정(NY N326445)은 멕시코 내 가공을 ‘단순한 공정’으로 보고 실질적 변형 불인정하여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하였으나, 재심요청서를 통해 제출된 공정 상세 설명, 현장 사진, 기계적 특성 변화 분석자료(Laboratory Report) 등을 검토한 결과 :
- 중국산 알루미늄 프로파일은 멕시코로 수입된 후, 단순한 조립을 넘은 고도 가공공정을 거침. 특히 열처리 및 인공 시효 공정은 알루미늄의 기계적 특성(강도, 경도 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며, T4 상태에서 T6 상태로 전환되어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충족함
- 이 과정에서 명칭(T4 → T6), 성질(물리·화학적 특성), 용도(충돌 에너지 흡수 부품) 모두 변경됨

- CBP 과학기술부서(LSSD) 또한 해당 열처리가 재료 특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처리 과정은 단순 조립 수준을 넘는 실질적 변형으로 판단됨
- 또한, 수입된 알루미늄 프로파일은 가공 전에는 최종 형태가 아니며, 멕시코에서 절단, 성형, 열처리, 조립 등 일련의 복합 공정을 통해 상업적 정체성이 완전히 변경됨
- 따라서 해당 Absorber Crashbox는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며, 최종 원산지는 멕시코로 판단

● (판정 결과)

- 멕시코에서 수행된 가공은 알루미늄의 기계적 특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용도 또한 변경시키는 등 단순한 가공 수준을 넘어서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므로, 최종 원산지는 멕시코로 판단됨

결론

- 멕시코에서 수행된 가공(특히 열처리 및 인공 시효 공정)은 단순 조립을 넘어서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므로, Absorber Crashbox는 멕시코산으로 판정됨
-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중국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본 사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인 동시에,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적용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우선 적용되므로, 본 사례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Case 11. 컴퓨터 캐비닛

사 례 명

- [컴퓨터 캐비닛]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HQ H305371 (2024.07.12.)

사 실 관 계

요청자	Expeditors Tradewin, LLC	
제 품	제 품 명	컴퓨터 캐비닛
	구 성	기둥, 바닥, 상단, 측면 패널 등 85~90개 부품으로 구성
	용 도	바닥 설치형, 바퀴 달린 금속 보관 캐비닛으로 컴퓨터 서버 및 하드웨어 보관용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9403.10.0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 시나리오 1 1. 중국산 6개의 기둥, 바닥, 상단 부품을 멕시코로 수입 2. 멕시코에서 이들을 용접하여 프레임 형성 3. 용접면을 연마하고 도장 후 검사 4. 멕시코산 측면 패널, 캐스터, 클립류 등을 조립 - 총 제조 시간: 약 90분 - 원재료 기준 멕시코산 부품 비중 : 약 33%(노동 포함 시 60%) - 멕시코산 부품 : 측면 패널, 나사, 너트, 와셔, 높이 조절 다리 등 보조부품 • 시나리오 2 1. 멕시코에서 6개의 기둥을 직접 제조(절단, 펀칭, 리벳 결합, 용접, 절곡 포함) 2. 멕시코에서 기둥, 바닥, 상단 부품을 용접하여 프레임 형성 3. 용접면을 연마하고 도장 후 검사 4. 멕시코산 측면 패널, 캐스터, 클립류 등을 조립 - 총 제조 시간: 약 140분 - 원재료 기준 멕시코산 부품 비중 : 약 53%(노동 포함 시 70%) - 멕시코산 부품 : 기둥(좌우 전면/중앙/후면), 나사, 측면 패널 등 주요 부품 포함	

쟁점사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1982)

- 미국 관세법상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지며, 사례별(case-by-case)로 이루어짐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품을 제작할 때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수행된 작업의 정도와 각 부품이 고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물품의 필수 구성요소로 탈바꿈했는지 여부임
- 이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실질적 변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1) 구성 부품의 원산지
 - 2) 해당 국가 내에서 수행된 가공의 정도
 - 3) 해당 가공을 통해 새로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탄생했는지 여부
- ※ 이 외에도 다음 요소들이 추가로 고려될 수 있음
- 제품 설계 및 개발에 투입된 자원
 - 조립 이후 수행되는 검사 및 시험 절차의 범위와 성격
 - 실제 제조 과정에서 요구되는 작업자의 숙련도

참고 판례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6 CIT 204(1983), *aff'd*, 741 F.2d 1368(Fed. Cir. 1984)

참고 판례 : *Carlson Furniture Industries v. United States*, 65 Cust. Ct. 474(1970)

- 수입자는 단순 조립이 아닌 조립, 접착, 철판 삽입, 다리 절단 및 평형 조정, 일부 제품의 경우 천 씌우기 및 바퀴(glides, casters) 부착 등 부가적인 가공 및 자재 투입을 통해 기능성 완제품을 제조함
- 법원은 이와 같은 공정이 단순 조립을 넘어서는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가공에 해당한다고 판단
- 이에 따라, 수입된 부품은 단순한 분해(knock-down) 상태의 의자가 아닌, 미국 내 실질적 변형을 거쳐 새로운 상업적 정체성을 가진 제품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시됨

참고 판정 : *CBP Ruling(HQ) W563456(2006)*

- 사무용 의자는 약 70개의 미국산 및 외국산 부품으로 구성되어 미국 내에서 조립되었으며, 수입 부품만으로는 완제품을 만들 수 없어, 추가적인 미국 내 작업과 자재 투입이 요구됨
- CBP는 미국 내 조립 공정을 통해 수입 부품들이 미국산 부품과 결합되어 개별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최종 제품의 핵심 구성요소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미국으로 판정함

참고 판정 : *CBP Ruling(HQ) 561258(1999)*

- 다리 브래킷, 서랍 유닛, 패널 등 다수의 수입 부품을 미국산 상판과 함께 조립하여 워크스테이션을 완성한 사례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 수입 부품들은 조립을 통해 개별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완제품의 본질적 구성요소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완제품의 원산지를 미국으로 판정

● (판정 결과)

시나리오 1 :

- 멕시코 내 조립 공정은 부품의 정체성 상실이나 기능 변화 없이 단순 조립에 해당하며,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기에는 불충분함
- 중국산 부품들은 모두 사전 가공된 상태로 용도가 결정되어 있고, 캐비닛의 주요 구조인 프레임 전체를 구성하며, 멕시코산 부품은 측면 패널, 나사, 너트, 와셔, 수평 조절기 등 부수적인 소규모 부품에 불과함
- 따라서, 캐비닛은 중국산으로 간주되어,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적용 대상임

시나리오 2 :

- 주요 부품의 제조와 고도 가공이 멕시코에서 이루어지고, 전체 가치 중 상당 비중이 멕시코산 자재 및 노동에 의해 형성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여 해당 서버 캐비닛의 원산지는 멕시코로 판단됨

결 론

- (시나리오 1) : 멕시코에서 수행된 공정은 단순 조립에 해당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중국산으로 간주되어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임
- (시나리오 2) : 멕시코에서 주요 부품의 제작 및 복합적인 가공이 이루어져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으므로, 멕시코산으로 간주되어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Case 12. 화분 받침용 이동대

사 례 명

- [화분 받침용 이동대]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42353(2024.09.11.)

사 실 관 계

요청자	Mullally International Inc.	
제 품	제 품 명	화분 받침용 이동대(Planter dolly) (모델번호 1807149)
	구 성	• 원형 상판(중국산) • 사각 강철 튜브 롤(중국 혹은 베트남산) • 4개의 회전 캐스터(중국산) • 너트 4개(중국산)
	용 도	화분을 올려놓고 전시하거나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가정용 이동형 받침대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9403.20.005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중국 및 베트남산 자재 캄보디아로 수입 2. 캄보디아 제조공정 - 사각 강철 튜브를 링 형태로 절곡, 절단, 용접, 연마, 드릴 작업 수행 - 원형 상판 연마(grinding) 및 샌딩(sanding) - 상판과 링 용접 - 너트 4개를 상판에 용접 - 슬래그 및 거친 모서리 연마 - 제품 화학처리(chemical bath), 음극 전기 도금(cathode electroplating) 및 분체도장(powder coating) 처리 - 캐스터를 용접된 너트에 부착 - 최종 검사 및 포장 3.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19 C.F.R. §134.1 (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례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1940)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참고 판례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1908)

참고 판례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1982)

- 만약,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참고 판례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1982), *aff'd*, 702 F.2d 1022(Fed. Cir. 1983)

- 외국산 신발 갑피(upper)에 미국에서 밑창(outsole)을 부착한 후 완제품 신발로 제조 → 원산지를 미국으로 주장
- 법원은 갑피가 신발의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며(the very essence of the completed shoe), 미국에서의 밑창 부착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다고 판시 → 실질적 변형 불인정, 원산지 외국산으로 유지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정 : *CBP Ruling(HQ) W968434(2007)*

참고 판례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1 CIT 470, 478, 664 F. Supp.535, 541(1987)

- 중국산 상판은 제품의 기능과 외관을 결정짓는 핵심 부품으로 전체 자재비의 1/3 이상을 차지하며, 중국산 캐스터는 제품의 주요 기능인 이동성을 제공하면서 전체 자재비의 약 절반을 차지함
- 반면, 캄보디아에서 제조된 링 튜브는 제품의 구조적 강성을 보장하긴 하나, 외관상 보이지 않고 단가도 낮으며 제품 기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임
- 상판에 너트를 용접하고, 금속 표면을 가공하며, 캐스터를 부착하여 완제품을 조립하는 일련의 공정들은 비교적 단순한 작업으로, 이들 공정이 차지하는 비용은 전체 제품 비용의 약 4분의 1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

- Uniroyal 판례에서는 신발의 갑피(upper)가 밑창(outsole)과 결합되어 완제품이 되더라도, 갑피가 완성품의 ‘본질(the very essence)’로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본 사안에서도 중국산 상판은 Planter Dolly의 본질에 해당하며, 단순 조립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
- 상판은 화분 받침용 이동대(Planter Dolly)의 핵심적인 기능 수행을 담당하는 부품으로, 이 부품의 원산지가 변경되면 완제품의 원산지도 함께 변경됨

● (판정 결과)

- 해당 제품은 주요 구성품인 중국산 상판과 캐스터가 전체 기능과 외관, 자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캄보디아에서 수행된 가공은 단순 조립 수준에 불과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또한, Uniroyal 판례와 유사하게 상판은 제품의 ‘본질’에 해당하므로, 본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단

결 론

- 중국산 상단 판, 캐스터, 너트는 캄보디아에서 수행된 작업에 의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화분 받침용 이동대(Planter Dolly)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되어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임

Case 13. 굴착기 커버 어셈블리

사 례 명

- [굴착기 커버 어셈블리]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HQ H327665(2025.03.25.)

사 실 관 계

요청자	CNH Industrial America LLC	
제 품	제 품 명	• 굴착기(backhoe loader) 조종석 내부용 좌·우측 커버 어셈블리 - 좌측 커버 어셈블리(부품번호 47955642) - 우측 커버 어셈블리(부품번호 48147488)
	구 성	• (좌측) 미국산 사출성형 플라스틱 기둥, 중국산 스피커, 독일산 옷걸이 고리 등 • (우측) 미국산 사출성형 플라스틱 기둥, 중국산 스피커 및 패스너 등
	용 도	굴착기 조종석 내부 양측 면에 설치되어 구조적 및 미적지지 역할 수행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8431.49.9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미국산 사출 플라스틱 기둥, 중국산 스피커 어셈블리, 독일산 옷걸이 고리, 중국산 패스너 등을 캐나다로 수입 2. 캐나다 제조공정 - 우측 커버 어셈블리 조립(4개의 중국산 패스너를 이용하여 미국산 사출 플라스틱 기둥에 중국산 스피커 어셈블리 부착) - 좌측 커버 어셈블리 조립(우측 커버 어셈블리와 동일하나, 추가적으로 옷걸이 고리를 패스너로 고정) 3. 완제품으로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1982)

- 미국 관세법상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품을 제작할 때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수행된 작업의 정도와 각 부품이 고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물품의 필수 구성요소로 탈바꿈했는지 여부임

참고 판례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6 CIT 204, 573 F. Supp. 1149(1983), *aff'd*, 741 F.2d 1368(Fed. Cir. 1984)

- 조립 작업이 단순하거나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판단 요소로는 조립 작업의 성격(예 : 조립되는 부품 수), 수행 작업 공정의 다양성, 작업 소요 시간, 숙련도, 세부 작업, 품질관리가 요구되는지 여부 등의 사항이 있음

참고 판정 : *C.S.D. 80-111*, *C.S.D. 85-25*, *C.S.D. 89-110*, *C.S.D. 89-118*, *C.S.D. 90-51*, and *C.S.D. 90-97*

- 만약,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참고 판례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1982), *aff'd*, 702 F.2d 1022(Fed. Cir. 1983)

- 외국산 신발 갑피(upper)에 미국에서 밀창(outsole)을 부착한 후 완제품 신발로 제조 → 원산지를 미국으로 주장
- 법원은 갑피가 신발의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며(the very essence of the completed shoe), 미국에서의 밀창 부착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다고 판시 → 실질적 변형 불인정, 원산지 외국산으로 유지

참고 판례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2016)

- Generation II 손전등은 대부분의 부품이 중국산이며 일부 백색 LED 및 수소 흡착제는 타국산으로, 모든 부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어 조립된 후 완성품으로 제조됨

-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를 검토하고 여러 판례를 참조하여, 수입 후 가공이 조립에 불과한 경우, 특히 수입된 부품이 물리적으로 변화하지 않은 경우, 성질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또한, 수입 시점에 최종 용도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조립의 성격, 즉 단순한 조립인지 또는 보다 복잡한 조립인지도 고려함
- 법원은 단순 조립 공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완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
- 이 판례는 단순 조립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품이 상업적 정체성(name, character, use)을 바꿀 만큼 가공되지 않는 한, 최종 원산지는 조립 국가가 아닌 핵심 부품의 원산지로 결정됨을 명확히 함

- 가공이 주로 조립(assembly)에 해당하는 경우, CBP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취함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290528(2018)

- 건축 마감재용 알루미늄 패널 사례로, 이탈리아산 케이싱, 코어, 장착 브래킷으로 구성되어 미국에서 일부 코어 절단, 케이싱·코어에 천공, 브래킷은 압출, 가공, 절곡, 절단 수행
- 가공은 제한적, 경미한 수준이며, 수입 당시부터 용도는 결정되어 있었고, 미국에서의 가공은 대부분 단순 조립 작업에 해당 → 실질적 변형 불인정

- CBP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 조립 여부보다 완성된 커버 어셈블리에 본질(essence)을 부여하는 핵심 부품에 주목하였으며, 이 사안에서는 굴착기 운전실(cab) 내에서 구조적·미적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 내부 지지 기둥’이 커버 어셈블리의 본질이자 핵심 기능을 실현하는 요소로 판단함
- 따라서, 굴착기 커버 어셈블리의 원산지는 해당 플라스틱 내부 지지 기둥이 제조된 국가인 ‘미국’으로 판정됨

● (판정 결과)

- 캐나다에서 수행된 조립 작업은 단순 삽입 및 나사 고정에 불과하여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커버 어셈블리의 본질은 미국에서 제조된 플라스틱 내부 지지 기둥이 부여하므로, 원산지는 미국으로 판정
- 이에 따라 무역법 제301조의 추가 관세는 적용되지 않음

결론

- 단순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며, 본질을 부여한 미국산 부품에 따라 원산지는 미국으로 판정되어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부 록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10대 FAQ	56
CBP 사전심사제도 신청 방법	62
CBP 사전심사 사례 조회 방법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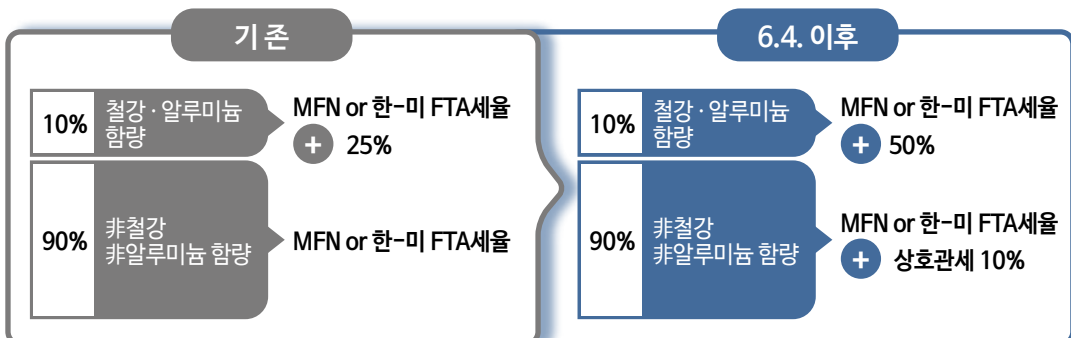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10대 FAQ

6.4.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 미 관세율 인상 관련

(관세율)

1.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의 경우,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제외한 부분의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 해당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가,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는 상호관세가 적용 됩니다.
 -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완제품 전체가 아닌, 실제 함유된 철강·알루미늄의 가치(함량 가치)에 대해서만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2025년 6월 3일(미 동부시간 기준) 이전까지는 해당 함량 부분에 대해 제232조 관세 25%가 추가 부과되었습니다.
 - 반면, 제품 내 비철강·비알루미늄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 즉 MFN(최혜국 대우, Most Favored Nation)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MFN 세율이란, 미국이 WTO 체약국에 대해 통상적으로 부과하는 기본 관세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6.4일부터는 이러한 관세 구조에 상호관세 10%를 추가 적용하기로 명시하였습니다. 즉, 비철강·비알루미늄 함량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 MFN 세율 외에 상호관세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대해 적용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율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파생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함량에는 추가 50%의 관세가 적용 되고,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는 MFN 세율에 더해 상호관세 10%가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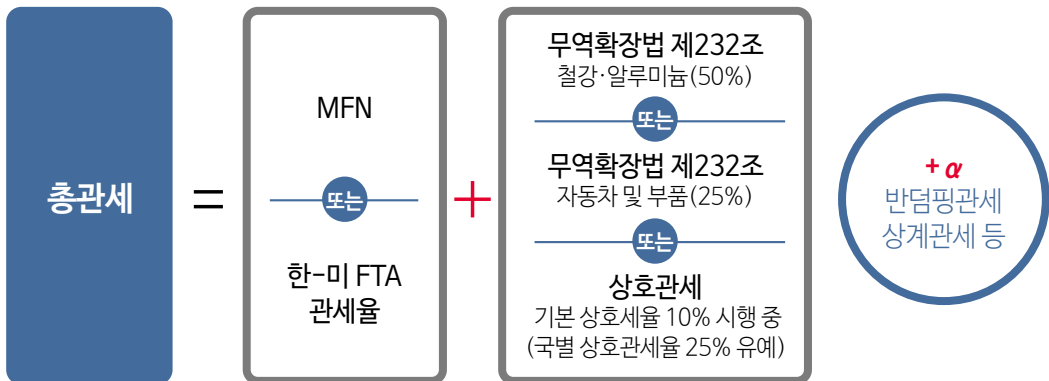
- 또한, 동일 품목이 철강 파생제품 관세와 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대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함량 모두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2. 미 행정부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해서도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는 추가로 부과됩니다.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특별조치로서, FTA에 따른 관세 특혜와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한-미 FTA의 요건을 충족해 기본 관세율이 0%가 되더라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즉, FTA 특혜는 기본 관세율에만 적용되며, 무역확장법 제232조나 상호관세 등의 조치는 이에 추가되는 독립적 조치이므로, FTA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한국산 철강 파이프 부속품(HS 제7307호)이 한-미 FTA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 수입 시 기본관세는 면제되어 0%가 됩니다. 그러나, 이 품목이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적용 대상이라면, FTA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로 50%의 관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한국산 물품의 미국 수출 시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



* (예) 철강(7307) = FTA 관세율(0%) + 무역확장법 제232조(50%) = 50%

3.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 관세는 상호관세와 중복해서 부과되나요?

●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호관세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과도한 관세장벽을 두고 있는 국가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로, 현재 부과 제외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물품에 기본 상호세율 10%가 추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적용을 받는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 제품은 상호관세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두 관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수출물품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대상과 특정 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해당 물품이 중복 적용 대상인 경우,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가 우선 적용됩니다.
 - 동일 품목이 복수의 대통령 포고(Proclamation) 또는 행정조치의 적용 대상인 경우, 미국 CBP*가 공지한 우선 적용 순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 됩니다. (CSMS # 65236574, 2025.6.3.자 참고)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우리나라 관세청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기능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관세부과 및 징수 실무 담당
 - ①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 ②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 관세
 - ③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및 그 파생제품 관세
- 따라서, 해당 자동차 부품이 위 두 조치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우선 적용되며,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제232조 관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품목분류)

5. 대미 수출기업이 품목분류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 및 「품목분류 사전 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는 수출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관련 애로 사항에 대해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들은 자사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상담받거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대미 수출 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건을 ‘우선심사대상’으로 지정하여, 우리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게 품목분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6.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은 모든 품목이 50% 세율을 납부하게 되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제232조 관세는 해당 제품군 전체가 아닌, 미국이 지정한 부과 대상 품목에만 적용 됩니다.
 -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제232조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이 발표한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관세가 부과됩니다.

- 제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의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미국 CBP 홈페이지의 화물 시스템 메시지 서비스(CSMS)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과 대상 품목은 미국 HTS(Harmonized Tariff Schedule) 품목번호 기준으로 지정되며, 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미국 HTS와 한국 HSK 간 연계표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자료 또한 관세청 FTA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HTS - 한국 HSK 간 연계표 제공 내역〉

등 록 일	연 계 표
'25.3.14.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 연계표
'25.4.14.	알루미늄 파생제품 추가 연계표
'25.4.18.	자동차, 자동차 부품 연계표
'25.5.19.	상호관세 적용 제외 대상 품목 연계표

(원산지)

7. 중국산 자재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추가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관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해당 물품이 한국산으로 판정될 경우 50%의 관세율을 부과받지만, 중국산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이 77.5%~105%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미 CBP는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며, 둘 이상의 국가에서 상품 또는 재료를 생산하는 경우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른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합니다. 이렇듯 원산지에 따라 세율 차가 크게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수출 전에 미리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들을 참고하여 원산지 판정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시) 철강 관세부과 시 미국 수입 세율 비교〉

구 분	MFN	제301조	대중국 추가관세		철강 관세	상호관세	최종관세
			'25.2	'25.3	'25.6		
한국산	0% (FTA 적용시)	-	-	-	50%	철강 제외	50%
중국산	0~10%	7.5~25%	10%	10%	50%	철강 제외	77.5~105%

8. 미 관세당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실질적 변형 기준'이란 물품의 품명, 특성, 용도가 변화하는 경우를 '원산지'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법령 규정이 없고 판례와 정성적 판단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미 CBP가 동 기준에 따라 건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존 판정 사례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세청에서는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를 담아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책자를 품목별로 제작하여 관세청 FTA 포털에 게시하였습니다.

1편 : 철강제품	2편 : 자동차 부품	3편 : 식품류	4편 :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9. 미 관세당국으로부터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미국 CBP의 사전심사 제도(Advance Ruling)*를 통해 원산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미 연방규정 19 C.F.R. §177 등에 따라 CBP가 관세 부과 시 고려되는 중요 요소를 사전에 판정해 주는 제도로 판정 결과는 CBP-수출업자·생산자 간에 구속력 발생

- 미 CBP는 수입 전 신청 물품의 원산지, 품목분류, FTA 적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판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전심사 신청 관련 아래 요약 표를 참고하여 본부에는 서면으로, NCSD(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에는 온라인(e-Ruling)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제작한 「CBP e-Ruling 신청 가이드북」에 담아 관세청 FTA포털에 게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BP 사전심사 신청 요약〉

처리부서	심사 종류	신청방법	신청인
NCSO 〈뉴욕〉	• 품목분류(Tariff Classification) • 원산지(Country of Origin) • 원산지표시(Country of Origin Marking) • 무역 프로그램 및 무역 협정의 적용* * 단, 역내부가가치비율(RVC) 관련 사항 제외	CBP e-Ruling 홈페이지 신청	
본부 〈워싱턴〉	• NCSO 사전판정 종류 4가지 + • 과세가격(FTA 역내부가가치비율(RVC) 포함) • 선박 및 운송수단, 제한 및 금지 물품 • 지식재산권(수입금지명령 집행 포함) • 관세 환급(Duty Drawback) • 보세상태 일시수입(TIB) • 자유무역지역(FTZ), 보세창고 • 물품처리수수료(MPF) • 정부조달(1979년 무역협정법 관련) • 수입 및 관세 산정 절차	담당부서로 서면신청	해당 물품의 미국 수입자, 해외 수출자, 기타 심사 신청 사항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및 권한 있는 대리인으로서 개인, 법인, 조합, 협회, 기타 단체 등

10. 미국에 수입신고시 세금 신고를 잘못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 복수의 관세 조치가 적용되었으나 미 행정명령 14289호에 따라 일부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관세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요청방법

- ① Liquidation 전 : 사후 요약 정정(Post Summary Correction)을 통해 수정 가능
- ② Liquidation 후 : 미 관세법(19 USC 1514)에 따른 Protest를 통해 환급 요청 가능
- ③ 행정명령 14289호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환급은 미허용
(예 :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는 최상위 우선순위로 환급 미허용)

CBP 사전심사제도 신청 방법



① CBP Advance Ruling 신청 홈페이지 접속

The screenshot shows the 'Electronic Ruling (eRuling) Template' page on the CBP.gov website. The page header includes th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logo and the title 'Electronic Ruling (eRuling) Template'. The main content area contains a welcome message, instructions for using the template, and a 'Begin Application' button. The footer includes navigation links for Travel, Trade, Border Security, Newsroom, About CBP, Careers, and Employee Resources, as well as social media icons and a 'Contact CBP' link. At the bottom, there are links for Accessibility, Forms, Site Policies, Vulnerability Disclosure Program, Accountability, Inspector General, The White House, DHS Components, No FEAR Act, USA.gov, FOIA, and Privacy. A National Terrorism Advisory System (NTAS) banner is also visible on the right side of the footer.

✓ <http://erulings.cbp.gov>

② 신청인 정보 작성

Ruling Requester Information

* First Name **이름** Middle Name (or initial)

* Last Name **성** Title

* Company Name **회사명**

* Address 1 **주소** Address 2

* City **도시** * State **주 N/A선택** * Zip/Postal Code **우편번호** * Country **Korea, South**

* Phone **전화번호** * Email Address **Email 주소** * Retype Email Address **Email 주소 재입력 (확인)**

③ 결정 유형 선택

Request Type 결정 유형 선택 (품목분류, 원산지 표시, 원산지, FTA 적용)

* Select Request Type (check all that apply)

Please select at least one request type

☐ Classification

☐ Marking

☒ **Country of Origin**

☐ Application of Trade Program or Trade Agreement

④ 신청서 작성

Questions

Question 1 대리인 제출 여부

Is this request being filed on behalf of a client?

If yes, please state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lient.

Client Company

Address 1 Address 2

City State Zip/Postal Code Country

Select N/A if not applica... Type N/A if not a Select an Option

Question 2 미국 AEO 취득 기업 해당 여부

Is your company a Trade Compliance Partner? (You must have a signed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CBPI. The following link provides further information on the Trade Compliance Partner program: <https://www.cbp.gov/document/faqs/ctpat-trade-compliance-program-faqs>)

If yes, please provide the Importer of Record Number.

Importer of Record Number

Question 3 신청물품과 동일물품에 대한 CBP 또는 미국 법원의 쟁송 진행 여부

To your knowledge are there any issues or requests for advice, concerning this commodity, pending before any CBP office or any Court?

Explain the issue or advice request pending; state before which CBP office or Court it is pending, and what advice was rendered, if any. For example, have you received CBP forms 28 or 29 on the issue or item presented before this office?

Explanation

Question 4 신청물품과 동일물품에 대한 CBP Ruling 신청 이력 여부

Is this a resubmission of a previous ruling request which required additional information?

If yes, please provide the previous ruling number.

Previous Ruling #

Question 5 신청물품에 대한 Sample 제출 여부

Is a sample being submitted?

If yes, please provide the tracking number.

Tracking Number

If yes, would you like the sample to be returned?

If yes, please provide the return label.

Return Label

Question 6 신청물품의 원산지

If available, what is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imported product?

Country

Select an Option

⑤ 신청 상세사유 작성

Description 신청 상세사유 작성(거래설명, 산업정보 포함)

Text of Ruling Request (Include a description of the transaction; for example, a prospective importation of merchandise X from country A). For classification requests, include sufficient information to determine the classification, such as a full and complete description of the article, principal use, commercial or technical designation, relative quantity by weight of each component, illustrative literature, photographs, chemical analysis, flow charts, CAS number, and any other information that may assist in determining the classification. **Limit to 5 items or less of the same class or kind.**

* Overview of Issue / General Description

0/4000

WHEN SUBMITTING YOUR RULING REQUEST, PLEASE BE SURE TO INCLUDE THE SUGGESTED INFORMATION FOR YOUR RESPECTIVE COMMODITY PER INDUSTRY. CLICK VIEW INDUSTRIES (OPTIONAL) TO VIEW REQUIREMENTS.

[Add First Item Description](#)

⑥ 첨부자료 제출(물품 설명자료)

Attachments 첨부자료 제출(물품사진, 카달로그, 제조공정도 등 설명자료)

NOTE: You can attach multiple files. The files sizes cannot add up to more than 25 MB.

Use the Attach button below to select and attach document files on your computer that support your ruling request. Acceptable file formats are: Microsoft Word (.doc, .docx), Microsoft Excel (.xls, .xlsx), Microsoft Power Point (.ppt, .pptx), Acrobat portable document format (.pdf), text file (.txt), JPEG image format (.jpg, .jpeg), GIF image format (.gif), Windows bitmap (.bmp), Portable Network Graphics (.png) and MP4 (.mp4).

To add attachment

1. Click on the Attach button below.

2. Browse to find the file(s) you want to attach.

Select the file(s), and then select Open to attach the files to your request.

If you have already added an attachment and decided to remove it, select the red discard button (X) next to the attachment name.

[Upload Files](#) Or drop files

CBP 사전심사 사례 조회 방법



CBP CROSS (Customs Ruling Online Search System) 조회

- 검색(search)란에 품명 또는 세번 입력 후 조회

✓ <http://rulings.cbp.gov/home>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쟁점과 사례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4편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발행일	2025년 6월
발행처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총괄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박헌
집필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김태용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김수미, 배윤지, 배준석, 김가윤, 김지향 한국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 송경은, 권민경, 박현혁
디자인/인쇄	플러스원

관세청의 승인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쟁점과 사례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